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시 벌금
상향 조정 〉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19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시 벌금 상향 조정 ..	2
※ 참고자료	8
1. 동물원 현황 및 관리체계	8

I. 제안경위

2026년 4월 30일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사건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현행 벌금액을 상향하여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2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시 벌금 상향 조정

개정안은 현재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위반 시에 처해질 수 있는 벌금의 상향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30조제3항제5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0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u>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u>	<u>제29조의2(벌칙) 제16조를 위반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30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8조,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이행하지-----</u> 부 칙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¹⁾는 질병·안전관리의 취약성, 상업적 목적에 치중한 일부 소규모 동물원·수족관의 운영,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전체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의결한 바 있음²⁾.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주요 내용]

- (등록제 → 허가제) 전문인력 기준 강화, 질병·안전관리계획 및 휴·폐원 시 보유동물관리계획 제시 등 구체적 허가요건 명시
- (검사관/거점동물원 제도 도입) 전문가 그룹인 검사관 자격 및 업무수행 범위*, 권역별 거점동물원** 지정
 - * 동물원 현장조사·평가 등 지원, ** 권역내 교육·홍보·자문 및 질병·안전관리 지원
- (휴·폐원) 휴원신고 요건 강화(연속 6개월 이상 미개방 사유 발생→연속 3개월 이상 미개방 사유 발생) 등
- (금지행위 및 질병관리) 올라타기 등 금지행위 추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적 검사 의무화
- (의무교육 등) 동물원 근무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기록물 보유기간(3년→20년) 확대 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1) 의결시점 명칭은 환경노동위원회였음.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2022.11.10.전체회의 의결, 2022.11.24.본회의 의결)(법률 제19086호, 시행 2023. 12. 14.)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허가시 제출하였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³⁾.

또한, 해당 의무를 위반 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그러나 최근 늑대 탈출 및 포획사건이 발생⁵⁾한 대전 동물원이 안전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조치명령) ①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휴원 시 관리계획과 다르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경우

3.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2026년 4월 8일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였음이 신고되었고, 이후 비상대책본부(대전시, 기후부, 오월드, 소방, 경찰 등)와 국립생태원,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전문인력 등과 함께 수색을 실시하여 2026년 4월 17일 마취총을 사용하여 늑대를 생포함.(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 조성 앞당긴다」, 보도자료, 2026.4.22.)

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계기로 동물원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⁶⁾.

[대전 오월드 사고 발생 이후 조치 사항]

- 2026. 4. 8. 늑대 1개체 사육·관리 구역 벗어나는 사고 발생
- 2026. 4. 17. 늑대 생포
- 2026. 4. 20. 금강유역환경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 * (주요내용) 1개월 이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조치완료보고서 제출, 현장조사 확인 및 후속조치 통보 전까지 동물원 시설 사용중지
- 2026. 4. 20. ~ 5. 19. 대전 오월드 늑대사 추가 울타리 설치, 쇠말뚝 설치, 토사 퇴적구간 정비, CCTV 확대 등 개선대책 이행
- 2026. 5. 29. 개선대책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 2026. 6. 2. 사용중지 명령 해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6조(안전관리)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처해지는 벌금의 상향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이를 통한 주변 주민의 안전과 동물 복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⁷⁾.

6)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전 늑대 탈출사고를 계기로 전국 동물원 12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폐원 또는 폐원 진행 중인 시설을 제외한 116개소를 점검하였음.

점검 결과 시설보완, 비상대응체계 정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1개소) 및 제도·권고(57개소)를 조치하였음.

7) 참고로, 안전의무 관련 벌금형의 입법례로는 「동물보호법」 상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 등이 있음.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형의 종류에 있어서 그 경중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르고,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며,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는데⁸⁾,

현행법 제3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의 위치는 동 조문 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의 핵심 규정이므로, 관련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8) 자료: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24. 5., p.767

문 의 처

02)6788-5541

참고자료

동물원 현황 및 관리체계

□ 동물원 현황

- '25.12 기준 전국 동물원 **121**개소(공영 27개, 민영 94개) 운영, 공영동물원은 유역·지방청, 민영동물원은 지자체가 관리·감독

※ 보유동물은 '25.12 기준 57,362개체(포유류 12,451, 조류 12,573, 파충류 3,802, 양서류 1,042)

< 규모별 동물원 현황 >

구분	계	대형	중형	소형
공영	27	11	14	2
민영	94	6	28	60

※ 규모 : 대형(10,000m² 이상), 중형(1,000~10,000m²), 소형(1,000m² 미만)

□ 동물원 관리체계

- (허가제 전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22.12.13) 및 시행('23.12.14)에 따라 허가제 도입, 허가권자는 검사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허가 여부 검토
- * 동물원 허가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 서식환경·전문인력 등 허가요건* 충족 시 동물원·수족관 설립이 가능하며, 기존 동물원은 5년내 허가를 받도록 유예(~'28.12)

* 동물서식환경 및 전문인력 기준,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동물관리계획 등

< 동물원수족관법상 허가기준 개정 내용 >

구분	기 준 (등록기준)	개 정 (허가기준)
서식환경 기준	< 신 설 >	• 보유동물 종별 기준 규정 * 세부기준은 허가업무지침에서 구체화
전문인력 기준	• 사육사 : 1~3명(40종 미만 1명 / 40종~70종 2명 / 70종 이상 3명) • 수의사 : 1명(축탁수의사 허용)	• 사육사 : 2~6명(70종 미만 2명 (위험동물 보유시 3명), 70종 이상 6명) • 수의사 : 1~2명(위험동물 보유시 2명)
질병·안전 등 관리 계획	• 자체 수립 후 이행	• 허가 시 계획의 적절성 평가

- (관리) 허가권자의 정기검사(매 5년) 및 수시검사(필요시) 실시

※ 위반사실 발견 시 시정명령 등 조치명령 가능, 조치명령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영업정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